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14일, 이해식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11.18.) 상정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의원)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가 행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때 그 결과의 진실성 확보가 필요하며,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나아정 전문위원)

1. 2차 가해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신설 등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면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안 제3조의2 및 안 제79조제1항),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사회적 참사와 그 참사로 인한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과 허위정보의 유포 등 2차 가해는 참사 이후에도 희생자의 유가족 및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더 키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음¹⁾.

따라서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2차 가해를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국가에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적·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대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와 비교]

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2차 가해로 경찰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안은 43건임.

구 분	개정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차 가해 금지 의무	○	X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²⁾
2차 가해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	X

첫째, 2차 가해 방지 조문 신설과 관련(안 제3조의2)하여, 개정안은 2차 가해 방지 조문 하에 2차 가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에서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해당 조문 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차 가해 방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2차 가해를 금지하는 의무를 내용으로 할 것인지, 2차 가해를 방지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할 것인지, 일반적인 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모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2차 가해 금지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안 제79조제1항)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현행법으로도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가중처벌이 가능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2차 가해 방지) ①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칙 조항이 삭제된 바 있음.

[다른 사회적 참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형벌]

구 분	개정안	다른 사회적 참사의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적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 유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과 같이 벌칙 조항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2차 가해 방지 조문의 신설과 연계하여, 다른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차 가해 금지 의무의 신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하나, 벌칙 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조사위원회 감정인 선서 규정 신설 등

개정안은 조사위원회가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³⁾으로 조사를 수행할 시 감정인의 선서 또는 선서서 제출 규정을 도입하여 그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를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포상금 지급은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가 입법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해당 신고 및 고발 행위를 심사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까지 발생하는 행정적·절차적 비용보다 해당 신고 및 고발 행위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상금 지급 기관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신고 및 고발 행위가 무엇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포상금 지급 관련 유사 입법례에서는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 행위를 일정한 유형은 법률에서 열거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포상금 지급 관련 유사 입법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u>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조세포탈 행위 2. 무자료 거래, 이중장부 작성 등 탈세행위 3. 그 밖에 조세의 부과·징수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u>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3. 보험료 부과·징수 또는 보험급여 지급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기여를 한 행위

따라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가 어느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인지를 법률에서 몇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대상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피해자 인정·지원금 등 지급 신청기한 연장

현행법은 피해자 인정 신청과 동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의 신청기한을 법 시행 이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⁴⁾, 현행법이 2024년 5월 21일 시행되었으므로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2026년 5월 20일에 도래함.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첫 조사개시 결정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5년 6월 17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될 수도 있는 잠재적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기한의 이익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등의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과 연계하여 현행법보다 연장하려는 것으로 신청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연장된 신청기한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등의 신청을 수용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피해자 인정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보상 관련 규정의 도입을 전제하더라도 현행법 상 생활 지원금이나 의료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등의 범위를 배상금, 위로지원금, 보상금,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조사위원회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추가피해 확인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등 신청기한이 동일함에 따라 피해자 인정 결정에 걸리는 시간(최대 6개월)을 고려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 근거만 법률에 마련하고 신청기한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4. 치유�휴직 신청기한 및 휴직기간 연장

현행법에 따라 치유�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25명(2025.10.14. 기준)으로, 치유�휴직은 참사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5월 21일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추가적인 치유�휴직 수요를 접수할 수 없어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의사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추가적인 신청기한 및 치유�휴직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치유�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정 결정을 먼저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과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인정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도과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피해자 인정 결정에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장기 추적 연구 시행 및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

대형 참사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예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가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 중에 있음⁵⁾.

개정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기 추적 연구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정신적 외상에 대해서는 전담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현재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5개소) 및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263개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등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⁶⁾, 이러한 심리지원체계는 피해자의 다양한 소재지에 따른 접근성

5)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②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을 고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참사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외에 기존 트라우마센터의 인력 및 프로그램 확충 등 다른 대안을 함께 검토하여 피해자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며, 12·29여객기 참사의 경우에도 별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하지 않고 기존 심리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참사별 트라우마 센터 설치보다는,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및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기존 심리지원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은 이태원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 치유휴직 등의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과 연계 하여 명확히하며,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피해자 인정 및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종료 시점과 연계하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로 수정하고 (안 제52조제2항), 치유휴직 신청기한 연장의 범위를 피해자 인정 및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신청기한과 유사하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며(안 제60조제1항), 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및 안 제79조제1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2조제2항 본문 중 “조사위원회”를 “이 법 시행일(법률 제20427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로 한다.

안 제60조제1항 본문 중 “이 법 시행”을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로,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72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u>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u>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조사위원회</u> <u>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u> ----- ----- ----- ----- ----- ----- ----- ----- ----- -----.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u>이 법 시행일</u> <u>(법률 제20427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u> ----- ----- ----- ----- ----- ----- ----- ----- ----- -----.

② <u>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u> ③ · ④ (생략) <u><신설></u>	<u>수 있다.</u> ② <u>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72조의2(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u> ① 국가는 피해자와 이태원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u>이태원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이태원트라우마센</u>	----- ---. <u><단서 삭제></u>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	---	---

	<u>터는 국가등이 운</u> <u>영하여야 하며, 이</u> <u>태원트라우마센터</u> <u>의 설치·운영 및</u> <u>운영위탁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제79조(벌칙) ① 제41 조제1항을 위반하 여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 문기구의 구성원이 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 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u><신 설></u>	제7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 ----- -----.	제79조(벌칙) ① 제41 조제1항을 위반하 여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 문기구의 구성원이 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 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 ----- -----.
	1. 제3조의2를 위반 하여 10·29이태 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	<u><삭 제></u>

<u><신 설></u> ② · ③ (생 략)	<u>를 훼손하거나 모</u> <u>욕하는 행위를 한</u> <u>사람</u> <u>2. 제41조 제1항을</u> <u>위반하여 조사위</u> <u>원회의 위원·직</u> <u>원 또는 자문기</u> <u>구의 구성원이나</u> <u>감정인을 폭행</u> <u>또는 협박하거나</u> <u>위력 또는 위계</u> <u>로써 그 직무집</u> <u>행을 방해한 사</u> <u>람</u> ② · ③ (현행과 같 음)	<u><삭 제></u>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0·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의2(포상)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2항 본문 중 “이 법 시행”을 “이 법 시행일(법률 제20427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로, “2년”을 “6개월”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이 법 시행”을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60조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을 신청하여 허용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0·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u>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u> <u>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u> <u>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u>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 ⑧
(생략)

<신 설>

<신 설>

. 이 경우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
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
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하는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8조(조사의 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2(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
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
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42조의2(포상)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
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법 시행일(법률 제20427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을 말
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6개
월-----.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근로자의 치유희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희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희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

② (생략)

<신설>

제60조(근로자의 치유희직) ① --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② -----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

<u><신 설></u>	<u>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u> <u>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u> <u>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	---